건설기계

□ 등 록 증□ 검 사 증

발급번호 : 4413-20231130-009194 제작년도 : 2008

최초 등록일 : 2013-06-24

| | | 건 설 기 계 의 표 시 | | | | | | |
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| 건설기계명 | 기중기 | 등 록 번 호 | 충남07고6085 | | | | |
| 등 | 형 식 | LTM1250-6.1 | 규 격 | 275ton 3 m | | | | |
| 록 | 원동기 및 형식 | D 9508 A7 | 차대일련번호 | W096765009EL05675 | | | | |
| 사 | 사용본거지 (비영업용은 소유자의 주소, 영업용은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) | g업용은소유자의주소 영업용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대섬길 10, 201호 | | | | | | |
| 항 | 소 유 자 의 표 시 | | | | | | | |
| | 성 명(법인명) | (주)중앙중기 | 주 민 (사 업 자, 외국인)등록번호 | 164811-0072607 | | | | |
| | 주 소 | <u>ŏ</u> | | | | | | |
| | [기사회레리기바 레이크 미 레12구세 파기 드른 미 되기를 뒤여이어 조대했다다. | | | | | | | |

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2023 년 11 월 30 일

사유: 변경

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

1. 주 요 제 원

형식승인번호: 2-07-1444-08-00

| 길 | 0] | 17412 | mm | 너 | ㅂ] | 300 | 00 | mm |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|
| 높 | 0] | 4000 | mm | 총 | 중량 | 1710 | 000 | kg | |
| 주행방식 | | 자주식 (타이어식) | | 정격출력 | | 612/1900 PS/RPM | | | |
| 기통식 | | 8 | 기통 | 연료종류 | | 경유 | | | |

2. 저 당 권 등 록 사 실

| 구분(설정 또는 말소) | 일 자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
| 설정 | 2021-05-28 |
| | |
| | |
| | |

※ 그 밖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를 열람·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3. 작 업 장 치

※ 기종별 작업장치 표시

기 중 기 표준붐의 작업반경 붐길이(점검대길이)(표준) 붐길이(점검대길이)(최대) 붐의 최대각도 붐 단 수 최대정격총하중

 최대정격총하증
 3 x 275000 kg

 선회속도(점검대)
 1.6 rpm

 혹권상속도(트롤리)
 130 m/min

 혹최대지상높이(그라풀)
 71 m

 $3.0 \sim 66.0 \text{ m}$

15.5 m

72 m

82 도

6 단

아우트리거설치폭(가로X세 8860,5(8839.5) mm *8500 mm

최고속도(90km/h) 제한장치 설치() 대 형 건 설 기 계 표 지 설치()

※ 대형건설기계는 도로운행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,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해 후 이동하여야 합니다.

건설기계 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)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.
-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(다만,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)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(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).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).

건설기계등록・검사증



천 안 시

| | | 4. 건설 7 | 계 검 사 란 | 충남07고6 | 6085 | 5. | 등 록 사 | 항 변경 | 란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|
| 구 분 | 구 분 검사일 유효기간 검사기관 | | 담당? | 담당자성명 | | 변경일자 | 변경사항 | 확인 | |
| 신규등록일: 2013-06-24 | | | | | | | | | |
| 정기검사 | 2020-06-03 | 2021-06-23 | 안전관리원충남본검사소 | 01 | 수형 | | | | |
| 정기검사 | 2021-05-20 | 2022-05-20 | 안전관리원충남본검사소 | 박 | 현춘 | | | | |
| 정기검사 | 2022-05-04 | 2023-05-20 | 안전관리원충남본검사소 | 박 | 광병 | | | | |
| 정기검사 | 2023-05-24 | 2024-05-20 | 안전관리원충남본검사소 | 최 | 시용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* 주의사항: | 첫째란에는 신 |]규등록 일을 ? | 적습니다. | | | | | | |
| * 수입건설기 | 기계의 제작연 | 월일의 표기는 |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| 기준으로 혀 | 하며, | | | | |
| 중고수입기 | 건설기계는 제 | 작연도의 12월 | <u>월</u>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| | | | | | |